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91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김상희 · 윤준병 · 박홍근
윤관석 · 김홍걸 · 이원택
황운하 · 최인호 · 정춘숙
임종성 · 최혜영 · 한정애
인재근 · 남인순 · 박주민
서영석 · 송재호 · 조오섭
권인숙 의원(19인)

제안이유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사건은 2010년 3만 301건에서 2021년 4만 6,496건, 유언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최근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 · 훼손 · 위조 · 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민법」 제1065조의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함)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언보관소 설치 등(안 제4조)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둬.

다.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안 제6조)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유언자의 열람 신청(안 제7조)

유언자는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언제든지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마. 유언증서 보관 사실의 통지와 유언증서의 폐기(안 제8조)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

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바.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안 제10조)

- 1)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의 보관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유언자의 인적사항, 보관 신청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유언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 2) 유언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유언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유언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안 제11조)

-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2)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함.
- 3) 유언등록부에 유언증서를 철회한 일자를 기재하며,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함.

아.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안 제12조)

- 1)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2)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에는 유언자의 인적 사항, 유언의 성립 일자, 유언의 방식, 보관소 및 보관번호, 보관 일자, 증명서 발급 신

청자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 포함됨.

자. 이의신청(안 제13조)

유언보관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실·훼손·위조·변조의 위험으로부터 유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증서”란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를 말한다.
2. “유언자”란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유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언보관소 설치 등) ①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그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말하고, 그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언보관소를 둔다.

② 가정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서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언보관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소의 조직 및 정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유언보관관의 업무와 교육)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유언보관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유언증서의 보관 신청) ①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유언증서를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후 밀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언보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을 하려는 유언자는 직접 유언보관소에 방문하여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와 유언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2.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3.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유언보관관은 밀봉하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민법」 제 106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언자의 열람 신청) ① 유언자는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언제든지 유언증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유언자의 사망에 따른 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와 유언증서의 폐기)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관계 상속인 등”이라 한다)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유언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날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자의 사망 사실 통보 방법과 절차, 유언증서 보관사실의 통지 방법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유언증서의 폐기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언증서 검인 제외) 이 법에 따라 유언증서가 신청·보관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1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언보관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유언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언자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2.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3. 보관 신청 연월일
4.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과 보관번호
5.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
8.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

③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유언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로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원본과 함께 보관한다.

④ 유언등록부와 전자화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유언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제11조(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제1항에 따라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제1항에 따라 철회를 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유언등록부에 유언증서를 철회한 일자를 기재하고,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며,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 ①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상속인 등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자의 인적 사항
2. 유언의 성립 일자
3. 유언의 방식
4. 보관소 및 보관번호
5. 보관 일자
6. 증명서 발급 신청자와의 관계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유언증서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유언보관소가 아닌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도 할 수 있다.

④ 관계 상속인 등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유언증서를 보관하는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해당 유언증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유언보관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4항의 신청에 따라 유언증서의 열람을 시킨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취지와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사실 또는 관계 상속인 등의 열람 사실을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

부서류 및 교부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유언증서 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보관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해당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유언보관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